부산에코델타 7블록 호반써밋 스마트시티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Ж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부산광역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년간 (본 청약의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실질적 전매는 가능함)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8.08.(목)	2024.08.13.(화)	-	2024.08.20.(화)	2024.08.22.(목)	2024.08.27.(화)

I

공통 유의사항

2024.08.08. 최초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구 분	당 초	정 정
7P	■ 특별공급기준 유의사항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 배제.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나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1P	■ 예비입주자 선발 배수	900% 선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u>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도 청약 신청 가능하나,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본 주택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동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 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 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세대수의 9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입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 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지 유의사항

П

■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호반써밋 스마트시티」 아파트는 <u>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능합니다.</u> 따라서 청약 전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http://hobansummit-bs.c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u>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u>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시공된 <u>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u>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08.(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48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04.(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814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8.13.(화)	2024.08.20.(화)	2024.08.22.(목)	2024.08.27.(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호반써밋 스마트시티 관리사무소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대로 243)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도 청약 신청 가능하나,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본 주택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동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1.11.24)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간(본 청약의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실질적 전매는 가능함)

표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 - 5229호(2024.07.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7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층 9개동 총 5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계약취소주택 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세대]**

|■ 입주시기 : 잔금납부 시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개시일 2024.03.25.(월)]

■ 공급대상

ᄌ태	주택 주택		주택형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 · · · · · · · · · · · · · · · · · ·		면적	세네ョ 대지지분	세대수	세대수 (신혼부부)	세대수	
2024930048	01	084.8888C	84C	84.8888	24.2920	109.1808	63.0810	172.2618	66.8592	1	1	-
2024930046	합계									1	1	-

(단위: 세대)

■ 공급금액 표

약식표기	도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학식표기	₹	<u> </u>	대지비	건축비	분양대금	계약 시	2024.10.28
84C	101	1505	137,323,000	373,677,000	511,000,000	51,100,000	459,900,000

※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이자, 관리비,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확장시 제공품목 현황

(단위 : 원)

약식표기	양신표기 동 호수 공급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774/1	0	'	21 3884	계약시	2024.10.28	-12
84C	101	1505	5,270,000	527,000	4,743,000	- 가변형벽체 기본형(각실 별도사용)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부 공사내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 및 품목 현황

(단위 : 원)

약식표기	F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잔금(90%)	비고	
막역표기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시 2024.10.28	1 <u>1</u> 2				
84C	101	1505	13,155,000	1,315,500	11,839,500	- 시스템에어컨 고급형4-1안(거실+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 바닥타일(거실+주방+복도) - 주방 상판,벽 세라믹타일+사각싱크볼+주방작업등(주방가구 "ㄷ"자형) - 전열교환기(제균 환기시스템)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별 세부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아파트,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145-910012-42705	㈜호반호텔앤리조트	

특별공급

IV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빌	보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경	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IV-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	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FUALTI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	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	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지	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17-	2024.08.0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구분	비율	소득금액						
TE	미걸	3인 이하	4인	5인	6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금액 건 3억3,100만원	건축물	시가표준 주택 - 토지가액 단, 아래	액 적용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경우는 제외	내용 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토지	농업인고 * 「초지법 허가증의 * 공부상 * 종중소위 제한을	마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 리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 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용되고 있는 경우 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٧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8.20.(화) ~ 2024.08.29(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문자	- 제공일시 : 2024.08.2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요망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하여 상세로
제출)
!강보험 건강(의료)
모두 제출 현황이
재

■ 계약시 구비 서류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계약금 입금증	본인	관리사무소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본인 계약시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아파트 계약용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접수장소 비치	
		0	추가 개별통지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0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발급용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계약시		0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V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 일시: 2024.08.20.(화)	• 일시
	• 확인방법	- 2024.08.27.(화) (10:00~16:00)
특별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장소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호반써밋 스마트시티 관리사무소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대로 243)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공급대금(아파트,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145-910012-42705	㈜호반호텔앤리조트	

- ※ 공급대금은 상기 대금별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수납이 불가하며(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대금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급(잔급)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납부기일 내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분양대금 대출 알선은 없으며, 모든 분양대금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 공급방법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만 유선 및 문자로 통보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검수를 통보 받은 경우 예비입주자 검수일(별도 통보)에 서류 제출하여 검수 받아야 하며 서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900% 선발하므로 서류검수 요청은 미달된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선순위 일부에게 통보하며, 선순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류검수 및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	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그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조되장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정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마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에서 이상의 직계존수(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페가이거나 주택이 열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수과 고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페가이거나 주택이 열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교계존수과 그 배우자 모두 당하여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조도 및 제조에 따라 건축하고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증되어 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정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 등에 자연 건물을 말한다는 경우의 제외의 제공으로 가 등에 제외 가 수하고 있는 경수에 전한지존에 들어 제외의 가 수하고 있는 경수에 전한지존에 들어 제외의 가 주택되었지만 하는 제외의 기 가 주택기에 1억울전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제강조제5항 및 제공조제16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의 제공으로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12. 무주택제대구상원인 외화인 현재 가격으로 구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2. 무주택제대구상원인 외화인 제가 가주하고 있는 경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2. 무주택계대구상원인 임차인에 가격으로 구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2. 무주택적이 1억원인 기관에 가격으로 구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2. 무주택적이 1억원인 기관을 취득하면 경우이 한한다한 경우 12.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으로 중은 제관 한다)한 경우 12.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으로 중은 관한 법률) 제공조에 따른 전략 기관에 가주한 경우

단지 여건 등

[단지외부여건]

Χ

- 당해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개발계 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 에코델타시티는 지구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로써,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종교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유통시설용지 등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단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 연결녹지 등은 관계기관의 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유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남측으로 연결녹지와 34m도로 건너편을 이어주는 교량이 건립되어 있으며,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의 경우 이용자들에 의한 소음, 조망, 일조 등의 간섭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에 접하고 있는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후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의 설계내용에 따라 관련시설이나 보행로 등으로 인한 인근 세대의 소 음, 빛, 조망 등의 환경권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음.

[단지내부여건]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부산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준에 따라 태양광패널과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되며 태양광패널은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옥상 경사지붕에 설치되고, 집광채광루버는 각 동별 7층 이상 세대의 침실3에 일률적으로 적용됨.
- 집광채광루버의 경우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단지 내에 설치된 사항으로써, 입주자의 개인의사에 따라 제거,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 시에도 해당 시설물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 |• 단지 내 각 주동의 위치, 층수, 세대별 위치, 인접동, 인접세대 또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의해 조망과 향, 일조량 및 주거환경 등의 차이와 사생활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립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본 단지의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 내 문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차량 주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 진출입차량 및 보행자로 인한 소음과 야간조명 등에 의한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등), 어린이집/경로당 등의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입주자의 이용에 따른 소음, 진동, 시각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트로피칼 광장 인근으로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을 위한 급배기루버가 계획되어, 트로피칼 광장 및 인근세대에서 소음, 진동, 시각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서측으로 부대복리시설의 냉난방을 위한 급배기루버가 계획되어 있어 실외기실 인근 또는 썬큰 보행 시 소음, 진동, 배기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01동 북측으로 단지주출입구 및 문주, 미술장식품설치공간, 맘스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고, 101동 5호열 하부로 지하주차장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 인근으로 근린생활시 설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음.
- 101동과 102동 사이에 테마숲(서늘맞이 정원)과 어린이놀이터#1, 지하주차장 썬큰이 계획되어 있음.
- ┃• 102동과 103동 사이에 잔디광장#1(커뮤니티 가든)과 생태연못이 계획되어 있음.
- 103동과 104동 사이 지상으로 어린이놀이터#2, 지하주차장 썬큰이 계획되어 있고, 지하층에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저수조/우수저수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장비 가 동 시 소음, 진동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 104동과 105동 사이에 잔디광장#2(피트니스 가든)과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썬큰이 계획되어 있음.
- 105동과 106동 남측으로 연결녹지가 접하고 있으며, 106동 전면으로 비상차량 진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106동과 107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3이 계획되어 있고, 지하1층 107동 인근으로 부대복리시설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음.
- ▶• 107동과 108동 사이에 경로당/보육시설 및 유아놀이터와 시니어가든, 커뮤니티센터 썬큰이 계획되어 있고, 지하층으로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서측)가 계획되어 있음.
- 커뮤니티센터(북측) : 피트니스, 골프연습실, G.X룸, 탈의실/샤워실, 키즈클럽, 동호회실, 맘스카페, 씨어터룸, 다목적실, 실외기실, 썬큰, 외부계단/승강기 등
- 커뮤니티센터(남측): 작은도서관, 독서실,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방재실/MDF실, 용역원실, AS사무실, 경비실, 화장실, 외부계단/승강기 등
- 108동과 109동 사이에 트로피칼 광장, 근린생활시설 실외기DA,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실외기실, 지하주차장보행자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108동 1층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음.
- |• 109동과 101동 사이에 외부계단 및 승강기가 계획되어 있어, 이용자에 의한 소음이나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mark>|•</mark> 지하1층 102동, 103동, 105동 인근으로 전기차충전구역(급속3대, 완속3대)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104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1개소, 전파방향기준)와 지상 일부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3개소)가 설치되며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102동~105동 좌측 옥외 화단)/ 중계설비(지하1층 주차장 휀룸#1~#4)가 설치되며,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인근의 세대는 근린생활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 부산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준에 따라 101동~109동 7층 이상 모든 세대의 침실3에는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되며, 입주자의 개인의사,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에 따라 제거,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음.
- |• 단위세대 거실 난간은 입주자(예비입주자 협의회)의 품질향상 요구에 의하여 무상으로 철재난간에서 유리난간으로 상향시공 됨.
- 단위세대 84C형 침실1의 측벽방향 돌출발코니는 개방향 발코니로써 발코니샷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 후라도 개별 샷시 설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기술 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J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사용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 사용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세대 내 설치되는 일반 전열교환기는 내부순환모드(공기청정모드)가 지원되지 않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109동 인접 엘리베이터 사용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 세대 내 기준천정고는 2.3m이며, 우물천정은 설치 범위는 일부 상향됨
- 고객의 개별 선택으로 건식벽체를 설치 또는 미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건식벽체의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 세대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 각 동 3층에서 10층까지의 경우 대피공간에 완강기 및 발판이 설치됨.
- 본 주택(아파트)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XI 참고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저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일강엔지니어링㈜	㈜이림기술단	㈜금라기술단
감리금액	1,659,345,600	418,202,746	198,000,000	110,88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66,487,425			철근콘크리트공사	25,186,457		기계설비 -	위생기구공사	695,146	
	기간이자	3,162,134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1,007,458	
	필요적경비	2,925,447			조적공사	967,160			가스설비공사	302,237	
	그 밖의 비용	-			미장공사	1,833,575			자동제어설비공사	151,119	
	계	72,575,006			단열공사	564,177			특수설비공사	-	
		토공사	1,712,679			방수,방습공사	775,743			공조설비공사	-
		흙막이공사	1,450,887			목공사	1,692,530	공사비 =	그밖의공종 -	전기설비공사	7,713,456
		비탈면보호공사	-	공사비	건축	가구공사	5,057,440			정보통신공사	2,809,962
		옹벽공사	352,610			금속공사	1,672,381			소방설비공사	6,496,705
	토목	석축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261,940			승강기공사	1,208,950
		우,오수공사	503,729			창호공사	3,223,867		그밖의	일반관리비	5,087,32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886,563		공사비	이윤	9,157,176
공사 비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1,007,458			계	101,897,667	
	도로포장공사	503,729			돌공사	1,007,458		설계비		695,107	
٠,	ы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 기계설비		도장공사	926,862	- - 간접비	감리비		2,367,913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775,743		일반분양시설경비		7,577,989
		조경공사	2,528,721			수장공사	1,239,174		분담금 및 부담비		925,038
		부대시설공사	30,224			주방용구공사	866,414		보상비		-
		공통가설공사	2,639,541			그밖의건축공사	503,729		기타사업비성 경비		55,875,380
	ᄁᄎ	가시설물공사	503,729			급수설비공사	846,265	Ī	계		67,441,427
	건축	지정 및 기초공사	6,095,122		급탕설비공사	846,265	1	그 밖의	비용	22,257,000	
		철골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805,966		합기	계	264,171,100

※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주택법」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VAT포함)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가산비 계		19,230,327		건축비 계		21,809,478	
	법정 택지이자		6,033,829		법정초과복리시설 건축비		1,868,462	
택지비 가산항목	취득세	취득세	3,997,498	건축비 가산항목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홈네트워크	5,186,624	
		교육세(취득세)	399,750			정보통신특등급	1,777,637	
	재산세	재산세	419,737			에어컨냉매배관	529,380	
		교육세(재산세)	83,947			기계환기설비	3,275,295	

	재산세도시지역분 293,816		공동주택성	성능등급	1,448,380	
등기수수료	보수료	18,15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2,961,535
	인지세	346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공사비		617,260
말뚝박기 공사비		3,722,172		후분양 기간이자		685,109
암석지반 공사비		861,018		법령개정에 따른 가산비	건강친화형주택	-
흙막이 및 치	누수벽 공사비	2,430,759		사업승인조건에 따른	외관특화공사비	1,690,459
택지와 관련된 경비	지역난방부담금	969,303		가산비	법정초과조경설치비	1,393,568
-		-		분양보증	수수료	375,769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호반호텔앤리조트	160111-0056344		
시공회사	㈜호반건설	204711-0007384		

■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hobansummit-bs.co.kr

■ 분양문의 : ☎ 1588-9798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